

2024학년도 1학기

# 세금 신고 관련 안내자료

출처 : 조진혁 세무사 블로그 일부 발췌

---

## 1. 프리랜서란?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말함.

즉,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일을 하는 사람. 직업군은 배우, 가수,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방송작가, 과외교습자 등 다양함

## 2. 주요 안내사항

### 가. 세금 신고 안내

구분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비고
세금신고 대상여부	○	사업소득 신고
세금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과외교습 신고여부	○	단, 재학생은 예외*

-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개인과외 포함)는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신고 필수
- 졸업 후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 신고 필수

####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

## 2. 주요 안내사항

---

### 나. 주요혜택

세금 신고를 할 경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창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세금 환급](#), 사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다. 참고사항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바로가기 [클릭](#)
- 개인과외교습 신고절차 바로가기 [클릭](#)

### 3.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예시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선택가능	디자인 용역 제공, 강연, 해설, 컨설팅 등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필수 (미 등록시 가산세 부과)	옷, 신발 등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

## 5. FAQ

---

Q1.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A1.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 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에 프리랜서가 매 달마다 해야하는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하셔야 합니다.

Q2. 소득금액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프리랜서 소득은 어디서 조회해야 하나요?

A2. 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쉽게 출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5. FAQ

---

**Q3. 프리랜서도 장부를 기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3.3%가 최종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 산출세액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도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성실사업자인 경우라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 5. FAQ

---

Q5. 프리랜서도 장부를 기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5. 프리랜서도 장부를 기장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로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가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기에 복리후생비는 나올 수 없으며 식대는 주로 접대비로 처리하여 한도(연간 1,200만원)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습니다.



#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졸업 후 예술활동) 장려금 지급 안내

## 1. 장려금 지급 취지

가. 개인창작활동(졸업 후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나. 취업통계조사 취업률 제고

- 2024년 취업통계조사 기준, 23년 8월 / 24년 2월 졸업생이 졸업일 이후 부터 24년 12월 31일 까지 개인창작활동(공연,전시,출판,음원저작권 수입,영상제작물 참여)에 종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취업률 상승 효과가 있음.

※ 관련 증빙서류 : 계약서(예술활동관련), 공연(전시)확인서, 공연(전시)장 사업자등록증, 포스터, 팸플릿 등

---

## 2. 증빙서류 제출안내

---

가. 제출시기 : 2025년 4월 취업통계조사 기간 중

나. 제출방법 : 취업통계조사 담당자(학과조교)에게 제출 (취업통계조사 기간 중 별도 연락)

※ 예술활동 참여 시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스캔파일 또는 반듯하게 촬영하여 별도 보관

다. 제출서류 : 다음장 참조

## 2. 증빙서류 제출안내

항목	증빙자료				
공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자 등록증</li> <li>-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li> <li>-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li> <li>-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자 등록증</li> <li>-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li> <li>-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li> <li>-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li> </ul>				
출판 및 출판	<table border="1"> <tr> <td>오프라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li> <li>- 졸업자와 출판 및 출판사와의 계약서</li> <li>- 인쇄 및 출판 증명서</li> <li>-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li> </ul> </td> </tr> <tr> <td>온라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ook 및 출판물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li> <li>-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li> </ul> </td> </tr> </table>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li> <li>- 졸업자와 출판 및 출판사와의 계약서</li> <li>- 인쇄 및 출판 증명서</li> <li>-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li> </ul>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ook 및 출판물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li> <li>-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li> </ul>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li> <li>- 졸업자와 출판 및 출판사와의 계약서</li> <li>- 인쇄 및 출판 증명서</li> <li>-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li> </ul>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ook 및 출판물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li> <li>-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li> </ul>				

항목	증빙자료
영상제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li> <li>- (선택) 작품 참여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엔딩크레딧 캡처화면 등)</li> </ul>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기관<sup>1)</sup>과의 신탁체결서</li> <li>-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 캡처화면 등)</li> <li>- (선택) 곡 또는 앨범 발매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sup>2)</sup></li> </ul> <p>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p> <p>2)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 까지의 기간 내 발매 및 활동 확인을 위함. 필수 제출은 아니나 심의위원회에서 앨범 발매일에 대한 문의가 많으므로, 미제출 시 추후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p>

※ 항목별로 요구된 증빙자료 중 일부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